

#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행동강령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이하 “KSP”라 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참여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KSP 사업에 참여하는 수석고문, 선임연구자(Principal Investigator), 과제연구자, 사업책임자(Project Manager), 사업관리자(Program Officer), Young KSPians(이하 “YKSP”라 한다) 등 모든 참여자(이하 “사업참여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준수의무와 책임)** 모든 사업참여자는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제2장 일반 규칙

**제4조(사업참여자의 상호존중)** ① 사업참여자는 다른 사업참여자와의 믿음과 존중,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함은 물론 상호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성과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② 사업참여자는 동료 참여자의 권한과 전문성을 존중하며 동료 참여자간의 열린 태도와 올바른 정보 공유를 통해 상호간 불이익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참여자는 개인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업참여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성희롱 금지)** 사업참여자는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6조(품위유지)** ① 사업참여자는 협력대상국 윤리·관습·종교·사회풍습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참여자는 협력대상국 기관의 역할 및 능력을 존중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회의·면담에 임하여야 한다.

③ 사업참여자는 주제결정 과정에 있어서 협력대상국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④ 사업참여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의 행동에 있어 진실성, 통합성, 근면성을 중시하여야 한다.

⑤ 사업참여자는 공무로 인하여 참석하는 회의 일정에서 사적인 행동으로 전체 사업참여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면 아니 된다.

### 제3장 국외출장 시 행동지침

**제7조(적용기간 및 책임)** KSP 국외 출장 기간은 출장을 위한 국내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출장일 전후 자의적인 활동 결과의 책임은 사업참여자 개개인에게 있다.

**제8조(출장 중 사적인 업무의 금지)** 사업참여자는 출장 기간 동안 또는 출장과 연계하여 업무와 무관한 종교활동, 자선활동 등을 함으로써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출장지 이탈 금지)** 사업참여자는 출장 기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장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협력국 방역수칙 준수)** 사업참여자는 협력국 면담 기관 및 공공이용 시설 방문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련 규정 및 사업총괄기관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장 중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지)** 사업참여자는 출장 기간 동안 출장지에서 골프나 사회통념을 벗어난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위법행위 금지)** 사업참여자는 출장 기간 동안 불법적인 물자 밀반입, 자금 세탁, 테러자금 지원 등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위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13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사업참여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업참여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특혜의 배제)** 사업참여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사업참여자는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사업 수행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요구 금지)** 사업참여자는 다른 사업참여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사업참여자는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을 시, 사업총괄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8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사업참여자는 사업 수행 전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업 종료 후 사업 결과로부터 파생되는 이익을 부당하게 취하거나 타인에게 취하도록 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9조(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사업참여자는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사업참여자는 업무용 차량, 각종 업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 동산, 부동산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적 거래 등의 제한)** 사업참여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금품 등의 수수 제한)** 사업참여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업참여자를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사업총괄기관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